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93,800,000	5,814,000
일반회계	178,770,000	5,363,100
특별회계	15,030,000	450,900
기타특별회계	15,030,000	450,900
상수도사업특별회계	6,000,000	180,000
수질개선특별회계	3,730,000	111,900
의료급여특별회계	550,000	16,500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	1,100,000	33,000
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	1,410,000	42,300
치수사업특별회계	2,240,000	67,20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"사고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017,422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